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52

발의연월일: 2020. 1. 21.

발 의 자 : 윤재옥 • 안병길 • 김희곤

정희용 · 김용판 · 김승수

류성걸 · 김예지 · 홍석준

양금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 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 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임무유공자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 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 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u><신 설></u>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부담한다. 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한다.

<u>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